

# 손해배상시 고령자의 가동연령 연구

(A Study on the working period of the old people for compensation)

---

최보국\*  
Bokuk, Choi

---

## <국문초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분야에서 실무상 논란이 발생하는 부분인 고령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법률 및 약관상 인정되는 가동기간과 실제로 인정되는 가동기간의 차이 중에서 어느 것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손해액 산정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고령자의 일실회익을 산정할 기준이 되는 기초요소 중 가동연령의 기간이 현실에서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살펴서 타당성 여부와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해본다. 실제로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고령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인정되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인정하여 우리나라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고령자의 실질적 노동기간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령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자의 가동연령의 인정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실질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손해배상금이 인정된다. 현지점에서 고령자의 소득활동의 통계적 비율을 살펴서 가동기간의 종료시점을 연장할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손해의 본질과 손해의 종류 등으로 살펴본다.

※ 국문 주제어 : 손해배상, 일실회익, 가동연한, 고령자의 노동능력, 소득상실설

---

\* 법학석사(손해사정전공), 다온손해사정 대표, 3중 대인·신체손해사정사  
투고일:2016. 12. 14. 심사일:2017. 01. 03. 게재확정일 2017. 02. 10.

## I. 머리말

손해배상책임<sup>1)</sup>은 가해자가 민사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는 법률상 책임을 말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이 존재한다.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 및 가해자가 자신이 보험약관에 부합되는 경우 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이다. 법률상 책임을 지는 손해에 있어 보편적으로 손해배상 사고에 관한 손해는 대물손해 및 대인손해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인사고 손해액은 전체 손해배상액의 약 50%로 추정된다.<sup>2)3)</sup>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그 대상이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기에 재물을 손괴한 불법행위와 다르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인신사고는 사람의 신체 또는 생명에 직접적인 손상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물건 또는 무체재산권 등과 같은 법익의 침해와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특히 사망 또는 치명적인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에 생명이란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할 수 없다. 이러한 비대체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피해를 손해액에 반영시킴으로써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재산적 보상으로 대체하여 받게 된다. 그러나 신체 침해로 인한 손해의 보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실제적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고령자의 사고의 경우에 중대한 신체 침해로 인해 손해를 보상받은 금액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당시의 실제 손해액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나 실제로 노동능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가능연령을 경과한 노령자라는 이유로 사고의 보상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실제 수입액과 비대칭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현행 법률 및 판례에서는 일반적으로 취업가능연령을 만 19세부터 만 60세로 정하고 있어서 만 60세를 초과한 고령자가 경제생활을 영위하다 사고가 난

- 1)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손해배상은 손해의 제거가 아니라 배상으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의 방법에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우리민법은 금전배상주의(민법제394조, 제763조)를 원칙으로 한다.
- 2) 1인당 연간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0.0027건이며, 전체 민사소송 제1심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17%이다. 이 중 대인손해는 50%정도로 추정된다.
- 3) 최창희·정인영, “국내배상책임보험시장성장저해요인분석”, 보험연구원, 2015. 10-11면.

경우나 아직 소득활동을 시작하지 못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상액 산정이 실제 손해액이나 미래 노동 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

특히, 가동기간 인정범위에 있어서 실제 노동 가능한 고령자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현상학적으로 이미 한국 사회는 급속한 고령자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의 주된 원인으로는 영양상태의 개선, 의학의 발달, 및 의료혜택의 확대에 의한 수명의 연장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생존기간 연장 및 노동능력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노동수입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정부도 이러한 인구 고령화 및 생존기간의 연장으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고령노동인력을 점차적으로 활동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각 고령자 개인적으로 육체적 건강의 여건 향상 및 정신적인 능력 발달로 인하여 취업의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국가는 고령사회에서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촉진시스템을 정비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정부는 종합계획으로 정년이 국민연금 개시연령의 연계를 통한 점진적 은퇴와 정년폐지를 중장기 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1991년 제정된 고령자 고용촉진법(현행법)상으로는 60세 정년이 권고사항이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정년은 2010년 기준 57.4세에 그치고 있으나, 2004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정년 60세 정년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게 되어 2016년부터 정년이 의무사항이 되었다.<sup>4)</sup> 향후 인구 구조는 점차적으로 감소전망이나, 2016년 현재 55세 이상의 생산가능 인구는 전체(12,3967천명)의 55.1%(6,832천명)으로 늘어나고 있다.<sup>5)</sup> 이처럼 사회 건강, 의료 복지 향상으로 인해서 실질적 고령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정년연령이 만 60세로 고정되어 있어서 향후 취업가능연한이 늘어날 가능성과 실무상 고령인구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기가 합당한지 여부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평가시 무조건적인 노령인구의 가동기간을 현행법상 만 60세로 고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각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상 타당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손해의 범위에 대해 민법 393조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통상의

4) 보험연구원, “정년 60세 연장법의 의미와 시사점 요약”, KIRI Weekly 제223호, 2013, 1-3면.

5)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 통계청.

손해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는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통상의 손해 범위에 관하여 이견이 존재하나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듯 하다.

## II. 손해의 개관

### 1. 손해의 개념 및 학설

#### (1) 손해의 발생 및 개념

민법 제750조<sup>6)</sup>(불법행위 내용)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sup>7)</sup>(운행자 책임)에서는 불법행위 또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사고와 같은 불법행위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망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손해는 일반적인 물적 손

연령별	2014. 05						
	고령층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실업률(%)
* 55~79세	11,378	6,273	6,138	134	5,106	53.9	2.1
55~64세	6,143	4,240	4,133	107	1,902	67.3	2.5
65~79세	5,235	2,032	2,005	27	3,203	38.3	1.3

연령별	2015. 05						
	고령층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실업률(%)
* 55~79세	11,834	6,538	6,374	164	5,296	63.9	2.5
55~64세	6,512	4,488	4,362	126	2,024	67.0	2.8
65~79세	5,323	2,050	2,012	38	3,273	37.8	1.9

연령별	2016. 05						
	고령층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실업률(%)
* 55~79세	12,397	6,832	6,660	172	5,565	53.7	2.5
55~64세	6,886	4,727	4,591	136	2,159	66.7	2.9
65~79세	5,511	2,105	2,069	36	3,406	37.5	1.7

- 6)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단서생략).

해와는 달리 사람의 생명에 그 교환가치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손해의 계산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신체의 손해에 대해 생명을 되돌리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금전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생명침해라는 손해, 또는 생명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무엇인지를 특정화, 구체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생명침해라는 사고가 사망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에 따른 손해액 산정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의 개념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법익의 침해로 인한 불이익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재산상에 생긴 불이익을 재산적 손해로 정의하고 정신상에 생긴 불이익을 정신적 손해라고 정의한다. 재산적 손해는 다시 가해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된 비용의 손해를 적극적 손해,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얻게 될 이익의 손해를 소극적 손해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재산적 손해로서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개념에 관하여서는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비재산적 손해인 소극적 손해에 속하는 일실효익의 의미를 둘러싸고 그 접근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8)</sup>

## (2) 손해에 대한 학설

손해의 본질에 관하여는 차액설과 평가설 중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차액설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객체”가 가지는 기본가치의 상실 내지 사상 그 자체를 손해로 인식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상태의 차액을 손해로 보는 데 반하여, 평가설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당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가치의 상실 내지 사상의 그 자체를 손해로 보는 것이다.

8) 이천성, “자동차사고로 인한 일실효익의 산정방법에 관한 비교연구:한국,일본,중국”, 손해사정연구 제3권 제2호, 한국손해사정학회, 2010.8, 130면.

### 가. 현실손해설(차액설, 소득상실설)

차액설은 신체의 사상으로 인한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이며, 사상 그 자체는 아니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설에 따르면 손해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의 3개로 나누는 손해 3분설을 취하게 된다. 또한 재산적 손해를 산정할 때에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지拂한 개개의 비용 및 실질적으로 상실하게 된 개개의 수입, 소득에 관한 것을 주장, 입증을 해야 하는 개별주의를 취하게 된다.

이 설에 대하여는 첫째, 그 방식이 복잡하고 개개의 손해 항목에 세세한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소송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피해자의 손해액의 차이가 현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액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구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둘째, 가해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 손해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에 빠지게 되며 셋째, 피해자의 소득상실을 기초로 소극적 손해를 산정하고 이것이 손해배상액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 신체의 가치에 큰 개인차를 만들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sup>9)</sup>

### 나. 사상손해설(평가설, 가동능력상실설)

평가설은 신체 사상으로 인한 손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개의 손해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일실이익, 치료비, 정신적 손해 등의 항목은 사상이라는 하나의 손해의 금전적 평가를 위한 매개체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러한 차액설에 의한 적극적, 개별주의적 배상액 산정방법에 대한 의문을 가짐으로 손해배상액을 유형화, 정액화하여 우연적인 요소와 개인차를 좁히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하지만 이 학설에 관하여서는 사상 자체를 손해로 보면 권리침해 내지 위법성과의 구별이 상실되고, 법률적인 영역인 불법행위 제도에 생명, 신체의 가치라는 철학적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비판과 피해자를 직접의 사상자에 한정함으로써 근친자를 직접의 피해자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결과로 손해로 인한 보호대상자가 제한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는

9) 한경환, “일실이익의 산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논문, 2010, 3면.

등의 비판이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현실로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에서 볼 때 피해자별 피해실정의 차이에 따른 손해액에 격차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의 요청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sup>10)</sup>.

## 2. 일실탁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일실탁익이라 함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노동의 대가라고 볼 수 없는 이자, 배당금, 부동산임대료 등의 자산소득은 일실탁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 이상 본봉, 제수당, 상여금 등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일실탁익 산정의 대상이 된다.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은 사고와 사망 또는 부상의 사실이고, 이에 대하여 얼마의 배상액수가 주어져야 할 것인가는 증거에 의하여 발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라도, 예컨대 대여금 소송에서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라 명할 것인가는 증거에 의하여 과거의 대차사실을 확정하면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만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는 얼마의 배상을 명할 것인가는 증거에 의하여 과거의 사고사실이나 수입사실 등을 아무리 제시해도 바로 그 배상액수가 정해질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오직 구체적 소송에서 인정되는 과거의 사실을 자료로 하여 피해자에게 얼마를 배상해 주는 것이 분쟁해결에 타당한가 하는 개별적, 구체적 판단이다.<sup>11)</sup>

10) 한경환, 전계논문, 4면.

11) 한경환, 전계논문, 4면.

### Ⅲ. 가동연령

#### 1. 가동연령의 판단

##### (1) 가동연령의 의의

가동연령의 정의는 노동을 하여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또한 가동기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조건으로 사람의 생존에 대한 기대여명을 특정하여야 한다. 인간의 향후 생존에 대한 기간은 장래에 필요한 개호비, 치료비나 보조구 등의 비용을 계산하는데도 필요하다. 판례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또는 기록 등을 조사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하는 바, 경제기획원이 매 4년마다 조사 작성하는 한국인 간이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평균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며, 한편 한국인 간이생명표는 매 4년마다 경제기획원이 조사 작성하는 것이므로 평균 여명은 손해발생시에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간이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sup>12)</sup>라고 판시하여 가동연령의 기준으로 기대여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추정 여명 및 가동연한은 피해자의 경력,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되어야 하나, 다만 일반 건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후 한국인생명표의 평균여명까지는 생존하고 또한 60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동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경험칙상 인정된다<sup>13)</sup>고 판시하고, 이처럼 일반 건강인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안 별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치사량이 넘는 농약을 마셨다면 피해자의 여명과 가동기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생 가능성과 그 후유증의 유무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한 후 그에 따라 여명과 가동연한 및 사고로 상실된 노동능력 등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점에

12)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349 판결.

13)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47179 판결.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일반 건강인과 같이 취급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sup>14)</sup>고 판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모든 각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판단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소득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설령 사고로 인하여 장애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실 수입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동능력이 언제부터 개시되어 언제 종료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즉, 가동능력을 벗어난 연령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차피 당해 연령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했더라도 소득능력이 없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여 없는 소득능력이 창출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소득능력이 없는 연령대의 사고에 대해 일실수입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특정인이 향후 얼마나 오랜 기간 일을 하여 소득을 얻을 것이냐를 산정하는 것은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이다.<sup>15)</sup>

이에 대해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일률적으로 나이별 구분하여 취업가능기간을 미리 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률적으로 취업가능월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각 개인의 노동 능력 및 가동기간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한 소득을 고려하지 않아서 실제로 입은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의 기회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동차 약관상 56세 이상의 취업가능월수는 다음과 같다.<sup>16)</sup>

[연 령]	[취업가능월수]
[56세이상 ~59세미만]	[48월]
[59세이상 ~67세미만]	[36월]
[67세이상 ~76세미만]	[24월]
[76세이상 ~]	[12월]

14) 사법연수원, 전게서, 130면.

15) 법원행정처, “외국사법제도연구-각국의 인신사고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2007, 54면.

16)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2) 가동기간 산정방식

가동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가)특정 연령까지를 가동기간으로 보는 방식, 나)정부의 가동기간표에 의한 방식, 다)BLS방식의 수정 과 같은 방식이 있다.<sup>17)</sup>

### 가) 특정연령까지를 가동기간으로 보는 방식

우리 법원의 실무가 통상 60세가 될 때까지를 가동기간으로 보는 것과 같이 특정 연령에 이를 때까지를 가동기간으로 보는 방식이다. 미국 법원 실무는 이 방법에 의한 경우 대체로 65세가 될 때까지를 가동기간으로 하고 있다.<sup>18)</sup>

### 나) 정부의 가동기간표(BLS:Bureau of Labor Statistics approach)에 의한 방식

노동부가 인구조사청의 현재인구조사를 바탕으로 발간한 1982년, 1986년 직업별 가동기간표를 참조하여 피해자의 가동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미국 인구조사청은 2000년 조사로부터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고용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인구조사, 지역사회조사 등이 그것이다.<sup>19)</sup>

다만, 정부통계에 기초한 가동기간은 모든 직업의 평균값으로 특정 직업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가동기간 동안 풀타임으로 일할 것을 전제하여 파트타임이나 일시적 무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또한 과거에 행해졌던 성별 또는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 장애 가동기간을 정함에 있어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sup>20)</sup>

### 다) BLS방식의 수정<sup>21)</sup>

경제 전문가인 Michael Brookshire 와 William E.Cobb 가 정부 통계에 의한 후유장애 전 가동기간 이 실제보다 더 길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다고 비판하면서 제안한 것으로 고용상태에 초점을 맞춘 것이 LPE(Life-Participation-

17) 법원행정처, 상계서, 54면-55면.

18) 법원행정처, 상계서, 54면.

19) 법원행정처, 상계서, 54면.

20) 법원행정처, 상계서, 55면.

21) 법원행정처, 상계서, 54면.

Employment)방식이다. 또한 A.M Gamboa, Jr.는 1987년이 방식을 발전시켜 가동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종, 성별, 교육정도 보다 후유장해라고 전제하고 후유장해를 가진 사람들의 가동기간표를 제정한 이래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2002년 개정판까지 나왔다.

Gamboa의 가동기간표는 정부통계를 바탕으로 연령, 성, 교육 및 후유장해 정도에 따른 가동기간을 제시하여 널리 쓰이고 있다. 이 가동기간표에 의할 경우 정부통계에 의한 경우보다 고졸이고 25살의 남자 제조공이 후유장애로 앓아서 하는 일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때 가동기간이 정부통계의 절반으로 단축됨으로써 약 236,000달러의 일실 수입 차이가 생긴다.

다만, 위 각 가동기간표상의 가동기간은 그 직업군의 통계적 평균값으로 피해자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 증인은 이를 기초로 피해자의 성별, 건강상태 및 교육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에게 적합한 가동기간을 재조정하는 형태로 입증하는 것도 가능하다.<sup>22)</sup> 한편, 위 가동기간표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가동기간도 나와 있는데 이 역시 장애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평균값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가동기간을 조정한다. 전문가 증인은 가동기간표를 바탕으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적합한 가동기간에 대한 의견을 증언하는 형태로 피해자의 가동기간을 입증하게 되는데<sup>23)</sup>, 그 의견은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sup>24)</sup>.

### (3) 가동연령의 개시시점

가동연령의 개시시점은 성년이 되는 만 19세로부터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 면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복무기간은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sup>25)</sup>.참고로 여자의 경우에

22) David S. Gibson & John P. Tierney, "Disability and Worklife Expectancy Tables : A Response", National Association of Forensic Economics, Fall 2000, p.309.

23) 일반적으로 증언은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것이어야 하지만 전문가 증인의 경우에는 의견 (opinion)형태의 증언이 허용된다. 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제 702조 참조. 어선선장의가동기간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Miller v. Pacific Trawlers, Inc., 204 Or.app.585(2006).

24) 법원행정처, 전게서, 54면.

25)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는 병역의무가 주어져 있지 아니하므로 군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현재의 실무상으로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남자가 피해자인 경우 가동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할 병역 복무기간을 병역법상 육군 의무복무 기간인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sup>26)</sup>(다만, 실제 군복무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동연령의 개시시점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때로부터 2년 후, 즉 23세로 하고 있다.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여 계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당시부터 일실수입을 인정받을 수 있다.<sup>27)</sup>

#### (4) 가동연령의 종료시점

##### 가) 정년이 보장된 자

직장생활을 함으로써 정년이 보장된 자, 즉 공무원이나 공기업종사자, 단체 협약 등에 의하여 정년이 보장된 기업체 근로자 등 급여 생활자의 경우에는

26)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 ①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육군: 2년
  - 2.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 3. 공군: 2년 4개월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 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지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 2.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 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을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유가 없으면 즉시 복무기간 연장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연장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7) 대법원 1970. 8. 18. 선고 70다999 판결.

당해 보장된 정년까지가 가동연령의 종료 시점이 된다. 정년이 있는 직종에서 정년이 60세까지라는 의미는 만 60세가 만료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 60세에 도달 하는 날 (만 59세가 만료된 날)을 의미함이다.<sup>28)</sup>

## 나) 일용노동자

일용노동자에는 도시일용 노동자와 농촌일용 노동자가 있는데 , 이러한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에 대하여 종래 판례는 55세가 끝날 때 까지라고 하였으나, 최근의 실무 및 판례는 도시일용 노임자 및 농촌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까지 보고 있다<sup>29)</sup>. 또한 일용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종 예컨대, 일용 조적공 등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sup>30)</sup>. 따라서 이와 달리 60세를 넘어서도 가동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 근거가 되는 특수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가동연한이라는 것은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평균여명의 상승이나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60세에 임박하거나 60세가 넘는 농촌일용노동자에 대하여는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상의 가동연한인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세를 넘어서도 가동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판례의 추세이다

## 다) 특수직업종사자의 가동기간

특수직업종사자에 대하여 일용노동자나 육체노동자보다 가동연령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면 당해 특수직업의 업무내용 신체적 정신적 자, 동종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연령별 근로자의 수 취업률 또는 근로 참가율 직종별 근로조건 직종별정년 제한 등 여러 가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상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sup>31)</sup>

28)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26692 판결.

29) 대법원 1989. 12. 26. 선고 다카16867 판결 등.

30)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20651 판결 등.

31)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10135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0859 판결.

## 2. 가동연한의 인정기준

위에서 기술한 상해 지급손해액 계산식 중 가장 많은 금액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상실수익액(일실이익)의 기본요소인 취업가능월수(가동기간)을 살펴본다.

### (1) 자동차보험약관 규정

“취업가능월수 산정은 취업가능 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되,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3조 2호에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56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약관상 ‘56세 이상의 취업가능 월수표’에 의하되, 사망 또는 장애 확정 당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 소득액을,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도록 하여 농·어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가동연한을 60세로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판례의 태도(대법원 2001.3.29. 선고 2000다 59920판결)

대법원은 ‘취업가능월수(가동연한)에 대하여’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 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가동연한 인정에 있어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특수직업 종사자에 대해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이상의 가동연한을 인정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특수직업의 구체적 업무내용, 이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자질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법원은 이에 관하여 연령별 취업인원수 등에 관

한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관공서나 동업조합, 협회 등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판례에서 인정된 60세 이상의 가동연한을 인정한 직종들에 대해 살펴보면, 간호학원 강사, 개인약국 경영약사, 소설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 중매인 등에 대해서는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또한 만 70세가 될 때 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한 직종으로 법무사, 변호사, 목사 등을 들 수 있다.

## IV. 가동연한의 인정 판례

### 1. 인정 판례

우리 법원은 일실수입의 산정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의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 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 하거나,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sup>32)</sup>. 다만 판례는 만연히 경험칙에 의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즉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사실 판단의 법칙으로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공통인식에 바탕을 둔 판단 형식이므로 가동연한에 관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 우선 그 전제로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에 관한 심리판단이 필요하다. 예컨대, 자동차운전사인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평균여명 이외에 자동차의 연령별 근로자의 수, 취업률 또는 참가율 근로조건 및 정년 제한 등 그 경험칙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sup>33)</sup> 판례는 일반적으로 의사

32) 대법원 1989.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 판결.

33)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사법연수원.상게서, 2015, 136면.

는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칙이라고 하고,<sup>34)</sup> 또 경험칙상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의 가동연한은 60세가 될 때까지라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sup>35)</sup>

이에 대한 과거 판례에 나타난 일반적 직종별 가동연한은 다음과 같다<sup>36)</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5세가 될 때 까지: 다방종업원(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959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세가 될 때 까지: 프로야구 선수 (투수)(대법원1991.6.11. 선고 .91다7385 판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세가 끝날 때 까지 :</li> <li>속칭 술집 가오마담(대법원 1979.11.27. 선고 79다1332,1333 전원합의체 판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5세가 끝날 때까지 :</li> <li>- 소 중개업자(대법원 1967.7.25. 선고 67가933 판결)</li> <li>- 채탄광부(대법원1971.4.6. 선고 70다269 판결)</li> <li>- 사진사(대법원 1977.5.10.75다2278 판결)</li> <li>- 설계사무소건축보조사(대법원1980.3.25. 선고 80다54 판결)</li> <li>- 미용사(대법원1982.3.9. 선고 81다35 판결)</li> <li>- 중기 정비업자(대법원1982.12.28. 선고 82다카 1297 판결)</li> <li>- 제과점기술자 겸 경영자(대법원 1987.5.12. 선고 86다카2804 판결)</li> <li>- 개인택시 운전사(대법원1988.3.8. 선고 87다카2663 판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7세가 될 때 까지 :</li> <li>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온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대법원 2011.3.9. 선고 2000다59920 판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세가 끝날 때 까지:</li> <li>- 목공(대법원1980.4.22. 선고 80다231 판결)</li> <li>- 개인택시운전사(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 35243 판결)</li> </ul>

3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3158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6677 판결등.

3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4364 판결. 사법연수원, “손해배상소송법률실무”, 2015, 136~138면.

36) 사법연수원, 상계서, 136~138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5세가 될 때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호학원강사(대법원1978.2.28. 선고 77다1976 판결)</li> <li>- 플라스틱 제조업자(대법원1980.1.29. 선고 79다1861 판결)</li> <li>- 지물포 소매업 종사자(대법원1980.12.23. 선고 80다934 판결)</li> <li>- 개인약국경영약사(대법원1986.1.21. 선고 83다카585 판결)</li> <li>- 수산시장소속 수산물 중매인(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38034 판결)</li> <li>- 소규모주식회사의 대표이사(대법원1992.12.8. 선고 92다24431 판결)</li> <li>- 소설가(대법원 1993.2.9. 선고 92다43722 판결)</li> <li>- 의사(대법원1993.9.14. 선고 93다3158 판결)</li> <li>- 한의사(대법원1997.2.28. 선고 96다54560 판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0세가 될 때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사(대법원1992.7.28. 선고 92다7269 판결)</li> <li>- 변호사(대법원1993.2.23. 선고 92다37642 판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종사자의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1세된 종업종사자, 63세가 끝날 때까지(대법원 1993.6.8. 선고 92다18573 판결 : 연령, 건강상태, 60세이상 인구의 농업종사실태 등에 비추어)</li> <li>- 60세 7개월된 농업노동종사자,65세가 끝날때 까지(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31917 판결)</li> <li>- 57세 10월 된 전담경작자, 63세가 될 때까지(대법원 1996.11.29. 선고 96다 37091 판결)</li> <li>- 54세 된 자영농으로전담경작자, 63세가 될 때까지 (대법원1997.3.25. 선고 96다49360 판결:농촌노동능력의 고령화 추세, 경작형태 등 고려)</li> <li>- 62세 4개월된 비닐하우스 재배 농업종사자, 65세가 될 때까지 (대법원 1997.4.22. 선고 97다3637 판결)</li> <li>- 52세 7개월 된 농업노동종사자,65세가 될 때까지(대법원 1997.12.23. 선고 96다46491 판결)</li> <li>- 56세9개월 된 전담경작자,63세가 될 때 까지(대법원2003.9.26. 선고 2003다 20176 판결)</li> </ul> </li> </ul>

- 기타 :
  - 57세된 사법서사, 사고 후 10년까지(대법원1987.6.23. 선고 86다카2863 판결:자격, 경력, 건강상태,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 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서 바이올린 교습소를 경영한 자의 과외교습 수입, 교향악단의 정년과 같은 61세까지(대법원1994.5.10. 선고 93다57346 판결)
  - 시립무용단 무용수, 정년 50세 불구 가동연한은 60세까지 인정(대법원 1995.4.11. 선고 94다41904 판결)
  - 63세11개월 남짓 된 자로서 농촌지역에서 잡화점을 운영해 온자, 사고일로 보통 3년이 되는 때 까지(대법원1997.4.11. 선고 97다4449 판결)
- 61세5개월된 택시운전기사(대구지방법원 2006.11.9.선고 2005가단6201 판결)
 

“원고가 택시운전기사의 일반적인 가동연한인 60세를 넘긴 61세의 나이임에도 00교통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해 오면서 월 평균 약 650,000원 정도의 급여와 기타택시 영업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사정, 00교통의 정년은 60세로 되어있으나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는 사정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63세에 이를 때까지 보통인부의 도시 일용노임 정도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다 “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 환경 및 건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험칙에 의하여 가동연한의 연장을 인정하는 판결로 보인다.

## 2. 외국의 경우

### (1) 미국의 경우

장래 일실수입 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가동기간에 과학적 통계자료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미국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우리 실정과 비교해 보면 성별 뿐만 아니라 인종, 지역, 장애정도, 여자의 결혼 여부에 따른 가동기간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다.

가동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1)특정 연령까지를 가동기간으로 보는 방식, 2)정부의 가동기간표에 의한 방식, 3)BLS방식의 수정과 같은 방식이 있다.

## (2) 영국의 경우

영국의 경우에는 소극적 재산 손해 중 일실이익을 기왕의 일실 수입과 장래의 일실수입으로 구분하고 장해평가를 통하여 인정되는 가동능력 상실 비율상당의 수입금액을 일실 수입으로 인정하는 것(평가설)이 아니라, 사고 전의 수입과 사고 후의 수입과의 실제 차액을 일실 수입으로 인정하고 있다(차액설). 즉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하고 가동능력이 상실 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종래와 같은 수입을 얻고 있고 또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장래에도 그 상태에 변동이 없으리라고 판단되면 일실수입이 없다고 인정되어서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장해 판정이라는 절차는 재판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된다. 또한 재판 이후에도 일실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장래의 일실 수입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하여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된 기간 또는 가동연한 을 결정하는 방법, 일실 수입 기본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가동연한보다 작은 수치를 가중치로 정해 기본금액에 곱하는 방법을 취하여 이를 재판시의 가치로 환산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sup>37)</sup>.

### 가) 가동연한

원고가 재판 이후 특정기간 동안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입증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면 될 것이나, 재판 이후 영구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의학적 증거와 사고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 직종 및 고용상황 등 재판 당시까지 알려진 제반 사정을 기초로 하여 60세에서 72세까지의 범위 중에서 원고가 일을 할 수 없는 가동 연한을 결정하고 있다. 사고로 기대여명까지 단축되어 가동연한까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단축되는 가동기간에 대해서도 생계비를 공제한 일실 수입 배상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전적으로 사용하게 될 생활비만 생계비로 공제하는데 반하여, 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생활비 외에 가족의 공동의 지출 비용 중 피해자에게 할당되는 부분도 포함하여 생계비로 공제하고 있다.<sup>38)</sup>

37) 법원행정처, 상계서, 55면.

38) 법원행정처, 상계서, 57면.

## 나) 기본금액

원칙적으로 재판 당시의 일실 수입을 기본 금액으로 하나, 재판 이후에도 피해자의 수입이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 당시의 최초금액과 가동연한 종료시점의 최후 금액을 평균하는 방법으로 기본금액을 정하고 있다.

## 다) 가중치

가중치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미리 지급받게 되는 장애의 손해를 현가로 감액한다는 의미와 기왕의 손해와 달리 그 발생이 불확실하다는 의미에서 일부감액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재판당시 원고의 나이와 사고로 인하여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된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할 가중치를 찾을 수 있도록 만단 Ogden Table이 이용되고 있는 바, 이는 현가요소로서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는 경제 상태에서의 자본 투자시 얻을 수 있는 세후 이자율을 복리로 반영하고, 불확실성 요소로서 보험통계에 입각한 조기 사망률을 반영하여 만든 가중치 계산표이다<sup>39)</sup>.

## (3) 일본의 경우<sup>40)</sup>

일본의 인신사고 인한 손해배상에서 소극적 손해를 산정하는 일실이익을 노동력의 저하 정도, 수입의 변화, 장애의 승진, 전직, 실업 등의 불이익 가능성, 일상생활상의 불편 등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유직자, 가사종사자, 무직자에 따라 위 휴업손해에서 본 수입을 기초로 하나, 학생과 유아등은 임금센서스 남녀별 전연령 평균의 임금액을 기초로 한다.고령자의 경우 취로의 개연선이 있으면 임금센서스의 남녀별, 연령별 평균임금액을 기초로 한다. 가동기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18세로 하고 대학졸업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대학졸업 예정시로 한다. 종기는 67세를 원칙으로 하는데, 60세가 넘는 고령자는 평균여명의 1/2로 한다. 직업에 따른 차이는 크게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그 가동기간이 우리나라보다 장기간 인정된다.

39) 법원행정처, 상계서, 57면-58면

40) 법원행정처, 상계서, 404면-405면

## V. 가동연령 기준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고령자의 일실이익 산정시 문제점

피해자가 노인인 경우에, 대개 이들은 직장에서 정년 등으로 퇴직한 경우가 많다. 종전의 우리 판례는 피해자가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는 일반 가동연한까지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는 등의 입증에 없는 한 종전 수준의 수입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기에 최저의 일반 일용 노임 상당액을 기초로 손해를 산정하였다.<sup>41)</sup> 그러나 최근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정년으로 퇴직한 후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정년 또는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 여겨지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하여 이를 심리하여 일실 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sup>42)</sup>. 그러나 문제는 노인 피해자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노인 피해자의 연령이 이미 가동연한을 넘은 고령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하여 이들 노인에 있어서는 일실 수익이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게 되는 점은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에 있어서 성년이 되기 이전 일실 수익이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과 동일한 맥락의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고령자의 일실이익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고령자의 경제활동 인구 동향<sup>43)</sup>

고령자의 일실 수익을 인정하기 위해서 경제활동 여부 및 소득의 정도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고령자의 경우에 현재 일자리를 계속할 생각인지에 대한 통계청 자료 분석결과를 취업자의 특성별로

41) 서울고등법원 1993. 11. 4. 선고 92나38203 판결 등.

4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 판결.

43) 신종각, “고령화연구패널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제5장. 고용(요약), 2015.

살펴보면 <표 1>와 같다. 취업자의 대부분은 현재를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고(94.4%),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기 원하는 경우는 1.8%,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은 경우는 1.4%로 나타났다.

<표 1> 취업자의 고용형태별 이직 의향 (단위: %)

구분	계속 그대로 일하기 원함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기 원함	현재 일에 추가하여 다른 일을 가지고 싶음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적게 일하기 원함	다른 일로 바꾸고 싶음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음	
임금근로자	94.6	2.2	0.9	0.3	1.2	0.8	
상용직	96.4	1.0	1.2	0.2	0.7	0.5	
임시직	94.8	1.9	1.0	0.0	2.1	0.3	
일용직	89.3	5.8	0.1	0.7	1.9	2.2	
시간제	90.8	4.6	0.5	0.6	1.4	2.1	
전일제	95.5	1.6	1.1	0.2	1.2	0.5	
자영업자	94.5	1.7	1.0	0.4	0.9	1.6	
무급가족종사자	92.4	0.0	0.8	1.9	0.8	4.1	
산업	농림/어업	92.3	1.0	1.3	1.3	0.6	3.5
	제조업(광업 포함)	95.5	1.4	1.9	0.2	0.9	0.2
	건설업	92.8	4.3	0.0	0.0	2.4	0.6
	도소매/음식/숙박업	94.2	1.5	0.9	0.2	1.7	1.5
	전기/운수/통신/금융	93.6	2.2	1.2	0.8	1.9	0.4
	기타 서비스업	96.4	1.8	0.5	0.3	0.2	0.9
	직업	관리자	94.4	3.0	0.9	0.0	0.9
(준)전문가		96.1	1.4	1.1	0.0	0.0	1.4
사무직		97.1	1.3	0.0	0.0	1.1	0.4
서비스근로자		96.6	1.6	0.2	0.0	0.5	1.1
판매근로자		94.3	1.5	1.6	0.7	0.8	1.1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91.0	1.0	1.4	1.6	0.7	4.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97.6	0.6	1.7	0.0	0.0	0.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2.6	2.7	1.8	0.7	2.1	0.0
단순노무 종사자		94.2	2.4	0.3	0.3	1.7	1.2

주: [1. 횡단면 가중값을 적용한 수치임]

[2. 무응답(모름, 거절)은 제외하고 분석한 수치임]

신종각, 2014고령화연구패널 기초분석보고서, 2015.12.31

또한, 은퇴계획 연령을 분석한 결과, 현재 취업자는 평균 69.2세에 은퇴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9세 이하는 65.2세, 60~64세는 69.1세, 65~69세는 72.3세, 70~74세는 77.2세, 75~79세는 80.7세, 80세이상은 85.2세에 은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 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적으로 60.0%이며, 59세 이하는 53.3%, 80세 이상에서는 83.9%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남성이 69.7세로 여성의 68.4세보다 1.3년 더 일을 하고 은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별로는 초졸 이하(73.2세), 중졸(68.8세), 고졸(67.9세), 초대졸 이상(65.7세)로 학력이 높을수록 은퇴계획 연령은 빨라지고 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 라고 응답한 비중도 학력이 높을수록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취업자의 특성별 은퇴계획 I 44) (단위: 세, %)

구분		전체	성		학력			
			남자	여자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초대졸 이상
전체	평균	69.2	69.7	68.4	73.2	68.8	67.9	65.7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음	60.0	59.9	60.1	64.8	61.0	58.1	52.0
59세 이하	평균	65.2	65.5	64.7	66.4	66.3	65.4	63.5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음	53.3	52.5	54.3	59.4	52.7	55.0	46.1
60~64세	평균	69.1	69.2	68.8	69.9	69.0	69.0	67.6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음	58.9	60.8	56.2	60.9	58.0	58.5	56.9
65~69세	평균	72.3	73.5	70.3	71.7	72.3	73.1	73.8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음	61.8	61.5	62.3	56.7	69.6	61.1	68.0
70~74세	평균	77.2	77.1	77.4	77.3	75.9	77.9	76.4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음	68.7	66.7	71.9	69.8	68.0	68.0	61.5
75~79세	평균	80.7	80.6	80.8	80.8	81.5	79.3	80.0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음	73.2	73.3	73.0	68.6	88.2	81.0	87.5
80세 이상	평균	85.2	84.9	86.5	84.7	-	87.5	84.5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음	83.9	81.4	89.5	87.0	100.0	66.7	50.0

주: 1. 횡단면 가중값을 적용한 수치임  
 2. 무응답(모름, 거절)은 제외하고 분석한 수치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 통계청 자료>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더 오래 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70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은퇴 계획연령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또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중도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부가 은퇴 계획연령이 가장 높고, 건강이 가능한 한 일을 하겠다는 비중도 읍면부가 63.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취업자의 특성별 은퇴계획 II 45) (단위: 세, %)

구분		가구소득				지역		
		Q1	Q2	Q3	Q4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부
전체	평균	77.0	72.2	69.4	66.3	67.6	68.2	72.3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음	71.1	66.2	60.1	51.6	55.8	61.6	63.1
59세 이하	평균	67.0	66.5	65.8	64.7	64.2	65.5	67.0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음	64.3	62.5	59.3	47.9	52.5	53.4	54.7
60~64세	평균	70.0	69.9	69.2	68.5	68.7	69.1	69.6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음	70.8	68.2	56.9	53.8	52.9	65.9	59.7
65~69세	평균	72.6	71.9	72.5	73.0	72.3	72.0	72.5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음	79.4	53.0	62.2	67.2	59.3	66.7	60.7
70~74세	평균	78.5	76.3	77.3	76.7	77.5	76.8	77.2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음	63.8	72.0	70.2	63.2	63.3	77.4	67.5
75~79세	평균	80.6	80.4	81.2	82.5	81.2	81.2	80.5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음	68.2	76.6	79.3	60.0	80.0	85.3	67.6
80세 이상	평균	83.8	84.7	87.7	-	82.0	86.4	84.5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음	86.2	86.4	62.5	100.0	88.9	54.5	90.5

주: 1. 횡단면 가중값을 적용한 수치임

2. 무응답(모름, 거절)은 제외하고 분석한 수치임

신종각, 2014고령화연구패널 기초분석보고서, 2015.12.31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 통계청 자료

44)신종각, 상계서, 2015.12.31.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 통계청

45)신종각, 상계서, 2015.12.31.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 통계청



〈표 4〉에서와 같이 고용형태별로는 임금 근로자는 평균 66.0세, 자영업자는 평균 71.8세, 무급가족종사자는 평균 70.6세에 은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자의 근로지속 계획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 라는 비중은 임금근로자 54.0%, 자영업자 64.0%, 무급가족종사자 61.3%로 임금근로자가 비중이 가장 적게 가지고 있었다.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임시근로자가 70.7세로 가장 오랜 기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취업자의 근로형태별 은퇴계획Ⅲ<sup>46)</sup> (단위: 세, %)

구분		임금 근로자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	전일제 근로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평균	66.0	64.6	70.7	67.7	68.7	65.1	71.8	70.6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음	54.0	46.6	64.0	64.9	59.3	51.6	64.0	61.3
59세 이하	평균	63.4	63.1	65.2	64.0	64.2	63.2	67.5	67.7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음	45.4	40.9	55.3	60.0	52.9	43.3	60.5	60.5
60~ 64세	평균	67.7	67.0	70.4	67.5	67.7	67.6	70.3	69.6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음	52.1	47.6	63.6	52.1	52.0	52.2	62.7	64.4
65~ 69세	평균	71.5	70.8	72.7	71.6	71.2	71.7	73.8	68.5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음	66.3	68.0	58.3	70.4	63.9	67.7	62.9	43.2
70~ 74세	평균	77.2	77.0	75.5	79.7	77.3	77.0	77.6	75.9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음	80.0	71.4	80.0	85.7	73.1	85.7	62.8	72.1
75~ 79세	평균	80.7	78.5	81.8	-	81.3	78.5	80.9	80.0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음	78.6	75.0	77.3	83.3)	72.0	87.5	72.3	66.7
80세 이상	평균	83.5	-	83.5	80.0	83.5	-	85.7	85.0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음	71.4	-	50.0	100.0	71.4	-	86.5	66.7

주: 1. 횡단면 가중값을 적용한 수치임  
 2. 무응답(모름, 거절)은 제외하고 분석한 수치임  
 신종각, 2014고령화연구패널 기초분석보고서, 2015.12.31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 통계청 자료

46) 신종각, 상계서, 2015.12.31.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 통계청

### 3. 가동기간 실무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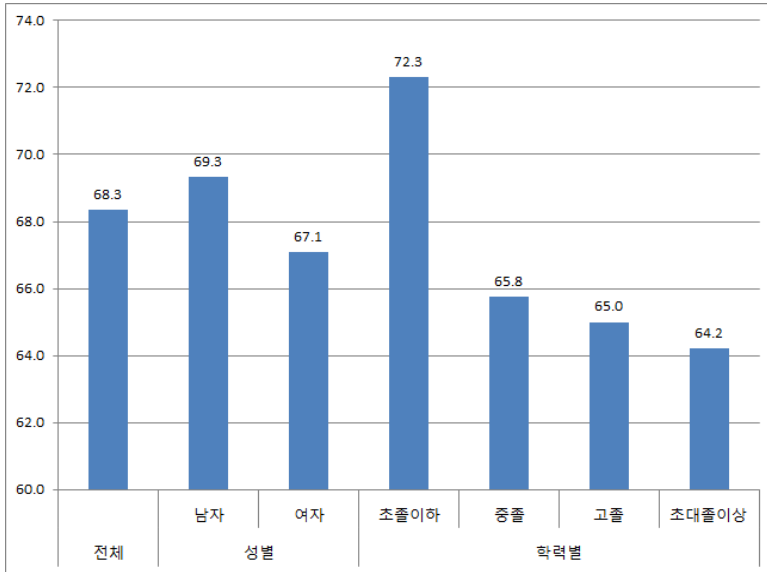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자의 경우에 실질적인 노동을 영위하고 소득 창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고령자라는 이유로 실제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사고 발생시 현실과 괴리가 있는 가동연령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현재 만 60세의 가동 기간의 변경을 위해 현 시점에서의 실질적 근로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고령자의 근로 기간은 수년전에 비해 연장되고 있다. 고령자의 근로 기간이 연장되는 이유는 의학적, 신체적 보완으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고령임에도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령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률적, 제도적으로 실제 수입을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고령인력에 있어서 정년과 관련한 논의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 뿐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시장에서의 중요한 쟁점이 되어왔다. 근래 들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 문제점들을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논의가 되었고, 이들 국가에서는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응하여 65세 법정 정년 제도를 택하고 있다<sup>47)</sup>.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65세를 법정 정년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퇴직하는 나이는 평균 61.84세이다<sup>48)</sup>. 이에 반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정년을 만 60세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만 60세로 인정하고 있는 정년제도는 한국에서 손해배상에서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특히 국내 개인사고 손해배상 체계에서 실제 사회에서의 노동연령을 고려하지 않는 너무 낮은 수준의 가동 연령 종료시점이다. 미국은 통상 65세를 가동연령 종료 시점으로 하고 있고, 일본은 67세를 가동연령 종료시점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은 60세를 가동 연령 종료 시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현재 60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고 있는 노동인구가 31% 이상인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49)</sup> 현재 연령 계층별 경제활동 인구비율은 다음과 같다.

47) 김주섭, “정년제도변화에따른기업의대응과정부정책의 해외사례”, 직업과자격연구, Vol.3, 2014, 62면.  
 48) 은퇴연령 국제비교(자료:Eurostat,2011): 아이슬란드-법정 퇴직연령 67세/실퇴직연령 66.3세, 노르웨이 67세/63.1세, 아일랜드 66세/64.1세, 스웨덴 65세/63.7세, 포르투갈 65세/63.1세, 영국65세/62.6세, 독일 65세/61.3세  
 49) 최창희·정인영, “국내배상책임보험시장성장저해요인분석”, 보험연구원, 2015, 101면.

연령계층별	2015. 08			
	15세이상인구 (천명)	경제활동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자 (천명)
계	43,086	27,064	26,141	923
15 - 19세	3,105	301	271	31
20 - 29세	6,384	4,034	3,719	315
20 -	3,087	1,578	1,450	128
25 -	3,297	2,456	2,270	186
30 - 39세	7,634	5,852	5,674	178
30 -	3,788	2,957	2,872	85
35 -	3,846	2,896	2,802	94
40 - 49세	8,428	6,819	6,651	168
40 -	4,204	3,365	3,275	89
45 -	4,224	3,455	3,376	79
50 - 59세	8,079	6,156	6,001	155
50 -	4,230	3,359	3,286	73
55 -	3,849	2,797	2,714	82
60세이상	9,455	3,902	3,826	76
60 -	2,755	1,699	1,652	47
65세	6,700	2,203	2,174	29
15 - 64세	36,386	24,862	23,967	895
15 - 24세	6,193	1,879	1,721	159
15 - 29세	9,489	4,335	3,990	345

또한, 통계청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은퇴한 신규 은퇴자의 평균 은퇴 연령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신규 은퇴자의 평균 연령은 68.3세이며, 남성은 69.3세, 여성은 67.1세로 남성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초졸이 72.3세로 가장 은퇴 연령이 늦고, 초대졸 이상은 64.2세로 분석되었다.



1. 횡단면 가장값을 적용한 수치임
  2. 무응답(모름, 거절)은 제외하고 분석한 수치임
-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 통계청 자료

[그림 1] 신규은퇴자의 평균 은퇴 연령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다. ‘임금피크제’라 함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는 등 고령자의 고용을 보장·연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즉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정점일 때의 임금에 대비해 일부 삭감하면서, 고령자의 고용을 지속시키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의 세형태로 행하고 있다. 정년연장형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이전부터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방식이고, 재고용형은 정년 퇴직

후 재고용을 조건으로 정년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이고, 근로시간 단축형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정년 전 또는 정년 퇴직 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말한다<sup>50)</sup>. 이러한 정년 피크제를 운영하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고령인구일지라도 일할 수 있는 건강,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되었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추가적인 사회적 인식은 고령자의 보유 기술과 숙련도가 기존의 노동자에 비해 뒤지지 않으며, 노동생산력에도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처럼, 실제 은퇴 평균 연령은 만 60세를 초과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법률과 약관상 인정하는 소득 활동 연령과 차이가 발생한다. 실무적으로도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불법행위(자동차사고 포함)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을 온전히 보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현실적 노동능력을 인정하여 정년제도 연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년제도 연장은 자연히 손해배상에서 실제 손해를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 VI. 맺음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재물 손해배상과는 다르게 손해배상액 산정시 어려움이 있다. 신체 손해의 경우에는 실제로 치료로 인한 적극적인 손해 이외에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수입에 대한 손해 즉, 일실회익에 대한 산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소극적 손해인 일실회익에 대한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그 피해자가 사고당시 수입, 직업, 나이(기동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입증 가능한 직업군의 피해자나 처음부터 소득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있

50) 이승길, 고령자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법 정책의 개편방안 연구, 경희법학 제 48권 제1호, 2013, 238-239면.

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일실이익 입증에 대한 부담은 적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소득 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고령자의 경우 즉, 법적으로 가동연령을 초과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배상 문제에서 사고 이전의 실제 수입액과 법적인 가동연령 종료로 인해 사고로 인해 상실하게 되는 수익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보전받지 못하는 손해에 있어서 현실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문제에서 현행 법률이 어느 정도 보장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향후 개선을 위한 근거를 제시했다. 현재의 일실이익의 기초인 가동연령에 준용하여 사용되는 고령자의 정년연장 및 법제화 논의 단계는 만 60세를 정년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과거에 비해 다소 기간이 확대 되었으나, 현대의 시대적인 의료, 복지, 인식을 비추어보면 여전히 추가적인 확대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제시한 통계청 자료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 2015년 8월 기준으로 60세이상 인구는 9,455(단위:천명)이며, 경제활동인구는 3,902(단위:천명), 취업자는 3,826(단위:천명)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60세가 넘어선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인구는 생존 고령인구 대비 1/3에 해당한다. 또한, 고령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이 가능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는 인구비율도 높아가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복지와 의료기술이 점차 발달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고령자의 법적 근로 가능 입법을 추진했다. 일본의 경우에 2006년 총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후 ‘정년연장’, ‘65세 계속고용제도’, ‘정년제폐지’ 중 하나를 보장하였고, 단계적으로 65세 정년까지 안정적인 고용을 확보하는 고용의무를 부과<sup>51)</sup>하였다. 이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고령 근로자의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 인한 부차적인 효과로 사고로 인한 고령자의 손해에 대해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하여 입법적인 개정을 통하여 고령자의 정년연장을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만 65세로 상향하여 조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51) 일본의 경우도 65세까지 고용의무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2006-2013년까지 단계적 시행한 바, 2016년 1000인 이상사업장/2017년300인-1000인 미만/2018년 100인-300인미만 사업장/2019년 50인-100인 사업장/2020년 20인-50인 사업장/2022년까지 20인 미만의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근거로 현행 판결도 현행 만 60세 규정을 만 65세로 상향하여 판결되어야 할 것 같다. 더불어서 현행 자동차약관인 취업가능월수도 56세부터 59세 미만, 59세부터 67세 미만, 67세부터 76세 미만, 76세이상으로 정해서 실질적 노동 가능연령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각 취업가능월수를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각 단계별 취업가능월수의 시점을 현시점에서 만 5세를 추가한 나이 만60세 이상 부터의 취업가능월수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곽윤직, 민법총칙 제 7판, 박영사, 2007.  
\_\_\_\_\_, 채권법각론 제2판, 박영사, 2016.  
김상용, 민법총칙 제3판, 화산미디어, 2014.  
법률서원, 손해배상자료집, 법률서원 편집부, 2007.  
법원행정처, 외국사법제도연구(1), 각국의 인신사고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손해배상액산정, 법원행정처, 2007.  
사법연수원, 손해배상소송, 사법연수원출판부, 2015.  
송덕수, 민법총칙 제3판, 박영사, 2015.  
장종운, 「손해배상실무」, 진원사, 2011.  
보험연구원, KIRI Weekly, 제 223호, 2013.
- 윤석찬, 신체침해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 법조제58권7호, 법조협회, 2009.  
이천성, 자동차사고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방법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일본·중국, 손해사정연구 제3권 제2호, 2010.  
최창희·정인영, 국내배상책임보험시장성장 저해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2015.  
한경환,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논문, 2010.  
신은주, 인신사고에서의 가동능력상실률평가와 신체감정의 문제점, 의료법학창간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신종각, 고령화연구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2015.  
조규성, 판례를 통해 본 자동차보험 약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보험학회지 제90집 11-12, 한국보험학회, 2011.  
양승례, 학생의 일실이익의 산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14.  
윤태식, 외국인의 인신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일실이익과 위자료, 법조 제 44권 5호, 법조협회, 2003.  
마승렬,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논문, 2000.



- 안영률,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의한 일실수입 산정, 법조 제44권 5호, 법조협회, 1995.
- 이승길, 고령자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법정책의 개편방안 연구, 경희 법학 제48권 1호, 2013.
- 김주섭, 전년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 정부정책의 해외사례, 직업과 자격 연구 제3권 제1호, 2014.
- 어수봉·최기성·윤광식, 정년연장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과자격연구, 제3권 제1호, 2014.
- 정원석·임준환, 정년60세 연장법의 의미와 시사점, 보험연구원, 제233호, 2013.
- 김진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평균임금증감제도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10.
- 이성균,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과 노동능력, 울산대학교, 노동리뷰, 2010.6월호.
- 신승희·손현섭·이항석, 생존기간을 고려한 생애소득대체율의 추정,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014.
- 박시내, 노동생명표 작성을 통한 중·고령세대의 은퇴연령 분석, 통계개발원, 2012.
- 오진호, 고령화시대에 개인맞춤형 장수리스크지수 계량화와 활용방안, 통계개발원, 2015.
- 박경하,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 유형화연구, 사회복지연구회, 2011.
- David S. Gibson & John P. Tiernney, “Disability and Worklife Expectancy Tables : A Response“, National Association of Forensic Economics, Fall 2000.

## **Abstract**

In case, an older worker has a accident, there occurs a difference between the legally acknowledged income from labor and the real returns. And there is also a difference between the working period that is legally and contractually acknowledged and the actually-acknowledged working period. Thus, computation of damages depends on which of these criteria you select.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in fact, Korean older person's retirement age is 60 years in Korean age. It is a relatively short period. There is a gap between the actual working period of an older person who is working in Korea and the legally acknowledged working age. Like this, in case damages are caused by illegal acts because an older person's acknowledged working age is too short, the damages that fall short of the real income become acknowledged. this study expresses opinions on the necessity to extend the work termination point of time to improve quality-of-life of aging population, protect victims, and preserve real loss, looks at the nature and type of damages, and considers the earning activity rate of aging population now and compares it with foreign cases.

**※ Key words : compensation for damages, lost earnings, working limit year,  
working ability of old people, lost income theory**